의안번호	제294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월 일 (제 307 회)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광수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2월 29일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

발의연월일 : 2012년 2월 29일
발 의 자 : 김광수, 심기보, 노광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장선배

1. 제안사유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위촉 근거조항 삭제(안 제5조 제2항)
- 보육시설연합회장, 보육정보센터장, 담당과장, 도의원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책위원회 업무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

○ 도지사의 취약보육 활성화 의무 부여 조항 신설(안 제20조)

○ 관련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제26조)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교직원”
-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정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이라 함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하고, “시설”을 “기관”으로 하며, 제4호 중 “”보호자“라 함은”을 “”보호자“란”으로 하고, 제6호 중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을 “”방과 후 보육“이란”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보육계획”이라 하고, 제3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제17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 제6조제7호 중 “보육시설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3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6호 및 제8호, 제14조제4호, 제7호, 제9호, 제22조제1호, 제23조, 제24조, 제26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4조제3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 제10조제6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 제12조제1항 중 “종사자”, 제22조제2호 및 제5호, 제25조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중 “벽지, 농어촌”을 “벽지·농어촌”으로 하여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제17조제4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센터의 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업무추진상황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호 중 "특수보육"을 "취약보육"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취약보육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법」제26조의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취약보육 어린이집의 지정) 도지사는 어린이집(「법」제1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다) 중에서 취약보육 기관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취약보육과 방과 후 보육 등 운영비

제23조 본문 중 "교부한"을 "내어준"으로 하고, 제1호, 제2호,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제3호 중 "교부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 기관 ····· 4. "보호자"란 ·····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
제3조(책임)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는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육계획 ····· ③ 보육교직원은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도 보육시설연합회장, 도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업무 담당과장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기타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④ (생략)	제5조(구성)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략)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8.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생략)	제6조(기능) ····· 1.~4. (현행과 같음) 5. **공립어린이집**····· 6. **어린이집**····· 7. **어린이집의 원장**····· **8.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벽지·농어촌·····어린이집····보육교직원**····· **10.**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남은 기간**····· **(삭제)**
제10조(회의) ①~④ (생략)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종사자**,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⑤ ·····**보육교직원**·····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상담, 또한 종사자들의 취업 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생략) (신설)	제12조(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보육교직원····· ～ (현행과 같음) · 센터의 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업무추진 상황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영아·장애아 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생략)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 8. (생략) 9.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10. (생략)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보육교직원························ ··················· 4. 어린이집 ························ ···· 5. ··················취약보육·········· ···········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집 ······· 8. (현행과 같음) 9. ································어린이집················· 10.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위원회) ①~② (생략)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보육시설의 장 3.~6.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⑧ (생략)	제17조(운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집의 원장 3.~6. (현행과 같음) ④·································· ····································· 남은 기간·····························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취약보육 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아 전담, 영아 전담, 시간연장형 및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시설(이하 "취약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취약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취약보육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취약보육시설의 지정) 도지사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보육 시설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취약보육 어린이집의 지정)**도지사는 어린이집(「법」 제1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다) 중에서 취약보육 기관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4. (생략) 5.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6. (생략) 7.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 보육 등 특수보육운영비 8.~10. (생략)	제22조(비용의 보조) ····· 1. 어린이집····· 2. 보육교직원····· 3.~4. (현행과 같음) 5. 보육교직원····· 6. (현행과 같음) 7. 취약보육과 방과 후 보육 등 운영비 8.~10.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의 정지·취소,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제23조(보조금의 반환) ·····어린이집·····내어준····· 1. ·····경우 2. ·····경우 3. ····· 받은 경우 4. ·····경우
제24조(지도·점검)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점검) ·····어린이집·····
제25조(교육) 도지사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보육교직원·····
제26조(시설의 평가)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설의 평가) ·····어린이집·····어린이집·····

관련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 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 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

원 등을 둔다.

③ 삭제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7회 임시회

2012. 3. 5.